

대구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나309684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구지방법원 2023. 12. 7 선고 2023나309684 판결

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4. 11 선고 2020가단70950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1. A

2. B

3. C
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목

피고, 항소인 1. E

2. F

변론 종결 2023. 11. 9.

판결 선고 2023. 12. 7.

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. 4. 11. 선고 2020가단70950 판결

주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[청구취지]

1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
가. 피고 E와 G 사이에 2019. 12. 27. 체결된,
나. 피고 F와 G 사이에 2019. 11. 8. 체결된
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G에게,
가. 피고 E은 대전지방법원 대덕등기소 2019. 12. 27. 접수 제20257호로 마친,
나. 피고 F는 같은 등기소 2019. 11. 8. 접수 제16508호로 마친
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[항소취지]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피고들은 항소제기 이후 항소이유에 관한 아무런 주장·입증을 하지 아니하였다).

2. 결론

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손윤경

판사최서은

판사김정일

별지